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부정 취득 관련 처분결정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에 따라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부정 취득 관련 처분결정통지서를 내용증명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우편물이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공시송달) 합니다.

2019년 9월 23일

국 가 평 생 교 육 진 흥 원 장

1. 제 목 :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부정 취득 관련 처분결정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성명	생년월일	주소	처분내용	처분사유	처분일	송달사유
하*례	680105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학점인정 취소 (상담이론과실제, 3학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한 학점인정	2019.7.3	폐문부재

4. 공고기간 : 2019. 9.23. ~ 2019.10.14.
5. 「행정심판법」 제23조 및 제27조에 따라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행정심판청구서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나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6. 「행정소송법」 제18조 내지 제20조에 따라 위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으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행정심판을 한 경우 행정심판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합니다.

※ 그 밖의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학점은행제 학습자 콜센터(☎1600-040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